

2024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4년 1월 30일(화) 오후 3시
(회의소집일 : 2024년 1월 18일(목))
2. 장 소 : 대학본부 2층 회의실
3. 개최기도 : 김대용 의원
4. 참석현황 (정원 12명, 재적 12명, 참석 9명)

구성위원	정원	재적	참석자명단	불참자명단
교원	3명	3명	김대용 최경윤	이정옥
직원	2명	2명	조은미	김동인
조교	1명	1명	조우진	
학생	3명	3명	김다윗 김세연 박진주	
동문	2명	2명	문지원	함선희
외부인사	1명	1명	이영섭	
합계	12명	12명	9명	3명

- 배석자 : 형희경 교무처장, 김경휘 기획처장, 박용선 사무처장, 한송희(간사)

5. 안건

- 1) 예수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심의 건.
- 2)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건.
- 3) 예수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폐지 심의 건.
- 4) 2023학년도 교비 추경예산(안) 심의 건.
- 5) 2024학년도 교비 본예산(안) 심의 건.
- 6) 예산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건.
- 7)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 서명자 지명 건.

6.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 김대용 의장이 정원 12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선언을 하다.

7. 전 회의록 접수

- 전 회의록 확인 후 조은미 의원의 동의와 문지원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9명 중 9명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하다.

김대용	조은미	김다윗
-----	-----	-----

8. 회의내용

1) 제1호 의안 : 예수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심의 건

- 김대용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형희경 교무처장이 예수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신규대조표로 설명하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24조(시험불응) ① 한 학기 두 차례의 시험(중간, 학기말)중 그 한차례를 유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는 시험불응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불응 이유가 승인되면 한 차례의 시험성적의 80%를 인정받는다.(시험불응원 양식은 교무처에 비치)</p> <p>② 시험불응신고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1. 신병으로 인한 경우 :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p> <p>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해당증빙서류</p> <p>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 해당증빙서류</p> <p>③ 시험불응원은 해당시험(중간 또는 학기말) 개시 일주일 전부터 해당시험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4조(시험불응) 한 학기 두 차례의 시험(중간, 학기말)중 그 한차례를 유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는 시험불응원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u>시험불응과 관련한 사항은 성적평가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u></p>	<p>- 시험불응에 관한 사항 개정</p> <p>- 학칙시행세칙에 명시된 시험불응 신고 시 첨부사항이나 추가시험 등에 대한 사항은 성적평가 및 관리규정에 더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칙시행세칙에는 시험불응 원칙에 대한 사항만 제시하고 그 외 사항은 규정에 담고자 함.</p>
	<p>부 칙</p> <p>이 세칙은 2024년 2월 0 일 부터 시행한다.</p>	

-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최경윤 의원의 동의와 조우진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9명 중 9명이 찬성하니 의장이 예수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포하다.

김대용	조우진	김다윗
-----	-----	-----

2) 제2호 의안 :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건

- 김대용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형희경 교무처장이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신규대조표로 설명하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7조(입학지원절차)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하는 자는 <u>시행세칙</u>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입학지원절차)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하는 자는 <u>대학원 학사운영 규정</u>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학칙시행세칙 폐지 및 학사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개정
제8조(입학전형) ① 생략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u>시행세칙</u> 으로 정한다.	제8조(입학전형) ① 현행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u>대학원 학사운영 규정</u> 으로 정한다.	학칙시행세칙 폐지 및 학사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개정
제19조(교과과정)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u>시행세칙</u> 으로 정한다.	제19조(교과과정)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u>대학원 학사운영 규정</u> 으로 정한다.	학칙시행세칙 폐지 및 학사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개정
제24조(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대학원의 학생이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입학전이나 재학중에 취득한 학점은 <u>시행세칙</u>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4조(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대학원의 학생이 국내외 다른 학교의 대학원에서 입학전이나 재학중에 취득한 학점은 <u>대학원 학사운영 규정</u>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현행	학칙시행세칙 폐지 및 학사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개정
제27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생략 ② 생략 ③ 신설	제27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현행 ② 현행 ③ <u>석사학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장이 수여한다.</u>	학칙시행세칙에 규정되었던 학위기 양식을 학칙으로 이관
제28조(학위청구논문 등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	제28조(학위청구논문 등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	학위청구논문 등 제출자격의 공인영어 점수를 학사운영규정에 명시

김대용

조우권

김다윗

<p>문제출 또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영어교과목[별표2]을 이수한 자 또는 [별표3]에 해당하는 공인영어 점수를 제출한 자</p>	<p>문제출 또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1. - 3. 현행</p> <p>4.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u>영어교과목(P/F)]을 이수한 자 또는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른 공인영어 점수를 제출한 자</u></p>	
<p>제31조(논문제출 자격시험) 제28조 제2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u>시행세칙</u>으로 정한다.</p>	<p>제31조(논문제출 자격시험) 제28조 제2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u>대학원 학사운영 규정</u>으로 정한다.</p>	<p>학칙시행세칙 폐지 및 학사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개정</p>
<p>제32조(학위청구논문 심사)</p> <p>① 생략</p> <p>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u>시행세칙</u>으로 정한다.</p>	<p>제32조(학위청구논문 심사)</p> <p>① 현행</p> <p>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u>대학원 학사운영 규정</u>으로 정한다.</p>	<p>학칙시행세칙 폐지 및 학사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개정</p>
<p>제38조의2(주임교수) ① 대학원 학과의 학사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두며,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u>시행세칙</u>으로 정한다.</p>	<p>제38조의2(주임교수) ① 대학원 학과의 학사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두며,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u>대학원 학사운영 규정</u>으로 정한다.</p>	<p>학칙시행세칙 폐지 및 학사운영 규정 제정에 따른 개정</p>
<p>제39조(준용규정)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수업료 기타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 및 <u>의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u></p>	<p>제39조(준용규정)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수업료 기타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 및 <u>의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과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u></p>	<p>법령에 대한 준용사항 명시</p>
<p>제40조(시행세칙의 제정)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u>시행세칙</u>으로 정한다.</p>	<p>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① 대학원 학칙 개정은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에 따른다.</p>	<p>학칙에 대한 개정절차 규정</p>
	<p>부칙</p> <p>이 학칙은 2024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김대용	조우권	김다윗
-----	-----	-----

- 최경윤 의원이 대학원 학칙 제39조의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에서 '본교'의 의미가 대학인지 대학원인지 모호하므로 '대학 학칙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수정 의견을 개진하다.
- 형희경 교무처장이 수정 의견을 검토하여 참고하겠다고 하다.
-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이영섭 의원의 동의와 문지원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9명 중 9명이 찬성하니 의장이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포하다.

3) 제3호 의안 : 예수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폐지 심의 건

- 김대용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형희경 교무처장이 예수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을 폐지하고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음을 설명하다.
-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최경윤 의원의 동의와 김다윗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9명 중 9명이 찬성하니 의장이 예수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폐지를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포하다.

4) 제4호 의안 : 2023학년도 교비 추경예산(안) 심의 건

- 김대용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김경휘 기획처장이 2023년 교비 추경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 다 음 -

예산 8,430,832,302원, 추경예산 8,654,705,124원, 증 223,872,822원

- 이영섭 의원이 예수대학교 심폐소생술센터가 예수대학교 간호학의 특화된 장점으로 홍보나 마케팅 전략을 통해 외부인까지 확대하여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김대용 의장이 2023학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심의를 요청하니, 원안대로 심의하자는 문지원 의원의 동의와 이영섭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9명 중 9명의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의결하다.

김대용	주유권	김다윗
-----	-----	-----

5) 제5호 의안 : 2024학년도 교비 본예산(안) 심의 건

- 김대용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김경휘 기획처장이 2024년 교비 본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 다 음 -

3차 추경예산 8,654,705,124원, 본예산 7,496,800,000원, 감 1,157,905,124원

- 김대용 의장이 2024학년도 본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심의를 요청하니, 원안대로 심의하자는 조우진 의원의 동의와 김다윗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9명 중 9명의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의결하다.

6) 제6호 의안 : 예산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건.

- 김대용 의장이 「예산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예산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야 할 2명의 대표를 선임하기 위해 본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설명하다.
- 예산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후보로 이정옥, 박지현 의원이 추천되고 김대용 의장이 찬반을 물으니 이영섭 의원의 동의와 조은미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9명 중 9명이 찬성하여 의결하니 의장이 예산조정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추천자로 이정옥, 박지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공포하다.

7) 제7호 의안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서명자 지명 건.

- 김대용 의장이 본 회의록 간서명자의 지명을 요청하니 김대용 의원, 조우진 의원, 김다윗 의원 이상 3명이 추천되니 지명하기로 하고 참석의원 9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지명 의결하다.

9. 폐회선언

- 김대용 의장이 폐회에 대한 성안을 요청하니 이영섭 의원이 동의하고 김다윗 의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16시 04분이었다.

김대용

조우진

김다윗

기록 : 한송희간사 

확인 : 김대용의원 

최경윤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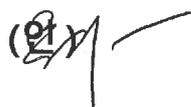
조은미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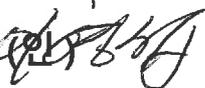
조우진의원 

김다윗의원 

김세연의원 

박진주의원 

문지원의원 

이영섭의원 

김대용	조우진	김다윗
-----	-----	-----